

##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등록번호 : 20080100109]

www.gimgane.co.kr

[최초 등록일 : 2008년 08월 02일]

[최종 등록일 : 2025년 12월 24일]



## 정 보 공 개 서

(주)김가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 .

(주)김가네

###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6 현대토픽스 4층

전화번호 : 02-923-7127(1588-7187)

팩스번호 : 02-923-1916

담당부서 : 가맹계약부 (내선1)

#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	1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	1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1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	1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2
6. 가맹본부의 임원명단 및 사업경력 .....	3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	3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	3
9. 사용을 허가하는 지식재산권 .....	4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4
2. 김가네 연혁 .....	4
3. 김가네 업종 .....	5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	5
5. 바로 전 3년간 가맹점 수 .....	5
6.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	6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 사업자의 연간 평균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	6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7
9. 가맹지역본부의 일반 정보 .....	7
10. 광고, 판촉 지출 내역 .....	8
11. 가맹금 예치 기관 .....	8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9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	9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	9
3. 형(刑)의 선고 .....	10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	10
2. 영업 중의 부담 .....	13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4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6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21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결정 .....	22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25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27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28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31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감독 .....	32
9. 광고 및 판촉 활동 .....	35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36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36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를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	36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37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	38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39
3. 경영활동 자문 .....	39
4. 신용제공 등 내역 .....	39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40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	40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	40
3. 교육·훈련의 주체 .....	41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41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	41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준 .....	41
3.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	41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김가네	'김가네' 외 1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6 현대토픽스 4층			
	설립일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년3월23일	2006년3월23일	2006년1월1일	김용만	02-923-7127	02-923-1916
	법인등록번호	110111-3424928		사업자등록번호	206-86-04573	

주식회사 김가네는 2006년 3월 23일 법인설립 전 1992년 3월 김가네 1호점 대학로 본점 오픈후 1996년 4월부터 개인사업자로 가맹사업을 개시하였습니다.

###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김용만 (주)김가네	김가네 외 1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6,4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용만	1588-7187	02-923-191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배우자 (사내이사)	박은희 (주)김가네	김가네 외 1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6,4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용만	1588-7187	02-923-1916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아들 (사내이사)	김정현 (주)김가네	김가네 외 1개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6,40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용만	1588-7187	02-923-1916

###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비 고
명 칭	'김가네'	

상 호	김가네_____점	
서비스표		서비스표 : 출원 제 40-2022-0183241호
광 고		
그 밖의 영업표지		

###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15,180,700	8,836,520	6,334,180	39,451,266	690,513	438,458
2023년	15,027,143	8,508,026	6,519,117	39,348,263	279,290	174,937
2024년	14,630,923	8,146,552	6,484,371	37,522,677	-265,365	-34,746

그 근거자료는 다음[별첨1]과 같습니다.

[참조] 금융감독원(<http://dart.fss.or.kr>)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단위:천원,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사업내용(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김용만	대표이사	1996년 4월 ~ 2024년 4월	(주)김가네 대표이사	총괄
			2024년 8월 ~ 현재	(주)김가네 사내이사	
			2024년 11월 ~ 현재	(주)김가네 대표이사	
			2008년 4월 ~ 2012년 10월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	총괄
	김원규	사내이사	2024년 10월 ~ 현재	(주)김가네 사내이사	
	김윤기	사내이사	2024년 12월 ~ 현재	(주)김가네 사내이사	
	권혁채	사내이사	2025년 4월 ~ 현재	(주)김가네 사내이사	
가맹사업 비관련	김은미	감사	2025년 4월 ~ 현재	(주)김가네 감사	감사

###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작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4년 12월31일	4	-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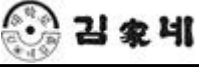


###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김가네	가맹사업 경영	2006년 8월 ~ 현재	브랜드명: '김가네' 등록번호: 20080100109 업종: 김밥 전문점 브랜드명: '치킨방앗간' 등록번호: 20140041 업종: 치킨전문점 브랜드명: 쭈가네(자진취소) 등록번호: 20080100108 업종: 쭈꾸미 전문점 브랜드명: 보족애(자진취소) 등록번호: 20100100056 업종: 보쌈, 족발, 쌀밥전문점
특수관계인 (배우자)	박은희	가맹점 경영	1992년 3월 ~ 현재	직영점 형태의 대학로점 운영
		가맹사업 경영	2014년 4월 ~ 현재	김가네 경남지사 운영
		농서식품 경영	2018년 8월 ~ 현재	농서식품(제조, 연구개발)

###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NO.	명칭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	----	----	------------------	-------------	-----	--------

1		서비스표	1996.9.18. 출원 1998.5.13. 등록	출원 제 41-1996-0011665호 등록 제 41-0042368호	김용만	2028.5.20
2		서비스표	2014.06.24. 출원 2015.04.16. 등록	출원 제 41-2014-0025332호 등록 제 41-0319539호	김용만	2035.4.16
3		서비스표	2021.10.06. 출원	등록 제 40-2079964	김용만	2033.9.8

당사는 소유자(등록권리자) 김용만으로부터 위 상표권에 관한 사용승락을 받았음.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유사한 표장의 혼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기 서비스표만을 허용합니다.

※ 아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NO.	명칭	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 만료일
1		상표	1998.2.24. 출원 1999.12.26. 등록	출원 제 40-1998-0004905호 등록 제 40-0460681호	김용만	2029.12.14
2		서비스표	1998.2.24. 출원 1999.1.23. 등록	출원 제 41-1998-0001495호 등록 제 41-0052476호	김용만	2029.1.23
3		상표	1998.2.24. 출원 1999.11.26. 등록	출원 제 40-1998-0004906호 등록 제 40-0460680호	김용만	2029.12.14
4		서비스표	2012.02.08 출원 2012.07.25 등록	출원 제 41-2012-0004033호 등록 제 41-0236537호	(주)김가네	2032.7.25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II. 가맹본부의 '김가네' 가맹사업 현황

-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1996년 4월 5일  
본점을 시작한 날: 1992년 3월 1일, 체인본사설립 : 1996년 4월 5일

### 2. '김가네' 연혁

가맹본부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이름	가맹사업 경영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김가네	김가네	김용만	1996.4 ~ 2018.6 2018.6 ~ 2024.4 2024.11~ 현재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439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6, 402호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6, 402호
		김정현	2024.4 ~ 2024.11	서울시 송파구 위례성대로6, 402호

### 3. '김가네' 업종

영업표지	업종
------	----

김가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기타외식	김밥, 분식, 라이스류

####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김가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2.12.31			2023.12.31			2024.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48	448	0	425	424	1	378	377	1
서울	165	165	0	154	153	1	139	138	1
부산	18	18	0	17	17	0	17	17	0
대구	1	1	0	0	0	0	0	0	0
인천	10	10	0	9	9	0	8	8	0
광주	32	32	0	32	32	0	30	30	0
대전	15	15	0	15	15	0	12	12	0
울산	5	5	0	5	5	0	5	5	0
세종	2	2	0	2	2	0	1	1	0
경기	130	130	0	127	127	0	116	116	0
강원	2	2	0	2	2	0	2	2	0
충북	7	7	0	5	5	0	5	5	0
충남	15	15	0	14	14	0	11	11	0
전북	8	8	0	8	8	0	5	5	0
전남	22	22	0	19	19	0	15	15	0
경북	3	3	0	3	3	0	2	2	0
경남	6	6	0	8	8	0	6	6	0
제주	7	7	0	5	5	0	4	4	0

#### 5. 바로 전 3년간 ‘김가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증감
2022	459	32	10	33	34	448	-11
2023	448	25	10	39	23	424	-24
2024	424	12	2	57	17	377	-47

‘김가네’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 6. ‘김가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김가네’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포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2.12.31	2023.12.31	2024.12.31
가맹본부	(주)김가네	치킨방앗간	20140041	치킨전문점	0/0	0/0	0/0

## 7. 바로 전 사업년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김가네’ 가맹점사업자 한명이 2024년에 올린 연간 평균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4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sup>2</sup> 당	상한	면적 3.3m <sup>2</sup> 당	하한	면적 3.3m <sup>2</sup> 당	
전체	377	392,353	25,912	2,064,159	117,885	55,968	2,332	
서울	138	477,455	34,298	2,064,159	117,885	120,797	7,858	
부산	17	344,617	20,241	560,307	50,374	154,511	3,693	
대구	0	-	-	-	-	-	-	5곳미만
인천	8	484,104	28,013	824,081	68,673	297,629	13,099	
광주	30	258,904	14,822	482,933	37,242	55,968	2,332	
대전	12	267,588	19,000	535,781	53,578	188,299	10,580	
울산	5	253,188	14,731	563,401	21,128	112,026	9,992	
세종	1	-	-	-	-	-	-	5곳미만
경기	116	406,036	28,203	1,055,463	71,920	79,459	7,453	
강원	2	-	-	-	-	-	-	5곳미만
충북	5	270,421	19,596	387,504	38,750	188,256	14,481	
충남	11	288,908	16,984	482,585	35,548	120,050	3,752	
전북	5	252,238	15,290	450,433	34,633	121,020	5,617	
전남	15	300,317	14,993	582,620	58,262	116,675	3,334	
경북	2	-	-	-	-	-	-	5곳미만
경남	6	313,998	17,891	377,351	22,136	141,802	7,999	
제주	4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 제주지역 4점 가맹점사업자 매출액은 본사가 공급하는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미만으로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6개월 이상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을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수치로 포함하였으나, 6개월 미만 가맹점의 매출액은 1년치로 환산하여 전체 연간평균 매출액을 추정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매출액 추정 근거자료로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에서 추정한 매출액은 다음의 산식을 따른 것입니다.

$$\text{매출액} = \text{당사가 가맹점에 공급한 물품 공급액} / \text{가맹점사업자 원가율(40\%)} / \text{가맹점사업자 매출대비 당사로부터 공급받는 비율(60\sim70\%)}$$

당사가 보유한 가맹점사업자 원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물품 공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5%~45%인 것으로 보이고,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매출대비 본사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공급 비율이 60%~80%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역산하여 매출액을 산정 하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김가네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당사 ‘김가네’의 바로전 사업연도 말 현재 운영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년도	377개점	2,621일

###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김가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1곳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역	상호/명칭	주 소		
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포함)	김가네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957-1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관리가맹점수	
	박은희	051-816-2666	28	
	가맹본부와의 계약기간	가맹점 모집권한	가맹계약 체결권한	가맹금 수령권한
	2024.4.17~2025.4.17	○	○	○

###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4년에 김가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  
GIMGANE 정보공개서 Ver.2024-12



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37]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 단	기 간	지출 비용			비 고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1/1~12/31	238,423	238,423	-	
광고	온라인광고, 박람회, 프로모션 등	1/1~12/31	200,720	200,720	-	
판촉	가맹점 오픈 판촉, 리모델링, 프로모션 지원 등	1/1~12/31	37,703	37,703	-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지정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부서	주소	전화번호
신한은행			1599-8000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신한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신한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가맹금 예치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김가네를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귀하는 또한 신한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 있음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서울보증보험(주)	
보험계약자	(주)김가네	가맹 본부
피보험인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 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과 피보험자의 가맹사업개시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보험금액	예치가맹금액	예치가맹금 범위 내
보장범위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액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 절차	가맹점 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접수&보험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당사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여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최초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김가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인허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최초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7,700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및 영업개시 전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귀하의 귀책사유로 계약 10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	일부지역 별도적용 (자체운영방식) 제주도, 해외등
가입비	2,310	계약 체결 즉시			
입지조사 및 컨설팅비	2,310	계약 체결 즉시			
경영지원비	1,540	계약 체결 즉시			
개설지원비	770	계약 체결 즉시			
매뉴얼 및 자료제공비	770	계약 체결 즉시			

2) 최초 교육훈련비를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내용	비고
총계	3,300			
최초 교육훈련비	3,300	계약 체결 즉시	개점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비 및 식재료비 등 기타비용.	교육 1일이전 계약해지시 반환되며,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3)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 체결 즉시	물품공급 잔존 채무액 정산 후 반환	(부가세 없음)

4)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13,000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 액
합계	13,000
가맹비	7,700
계약이행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최초 교육훈련비	3,300

5)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17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15평, 실면적49.5㎡ 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2,850~102,85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협력업체	33,000	220	공사전 40% 중도금 40% 공사마감후 20%지급	공사전 계약취소	33㎡ 기준 3.3㎡ 늘어날 때마다 2,200천원 추가부담
간판비용	협력업체	5,500		설치후 즉시	공사전 계약취소	매장특성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주방설비	협력업체	15,400		설치후 즉시	개점전계약 취소	
집기류 및 의·탁자	(주)김가네	15,400		공급 즉시	개점전 계약취소	
최초공급 상품비용	(주)김가네	3,000		공급 즉시	상품 미공급시	
인테리어 외적공사비	협력업체	20,000~30,000			공사전 계약취소	자체시공 가능
DID솔루션	협력업체	550		공급 즉시	공사전 계약취소	셋탑박스 1대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점포내장공사) 자체 시공시 감리업체에 3.3㎡당 330천원(부가세포함)의 감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6)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비고
가맹희망자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입점지역 선정 → 후보점포 확보 → 현장조사 등 시장 분석 → 입점할 점포 선정 ※ 가맹희망자는 자신의 책임으로 점포를 설치할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고, 다만 당사는 점포선정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점포의 입지분석, 해당 점포의 관련법령 및 행정규제에 대한 충족여부 분석, 점포임대차 협상 및 임대차, 권리금 계약의 체결을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문의 : 당사 가맹계약부 (전화:1588-7187)

## 7)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특별한 기준 없음

## 8)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김가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 내역		공급방법	공급업체
내장재	실내공사	추후 별도 계약	인토디자인
외부	간판외 4여종	추후 별도 계약	두리광고
주방기기	냉장고외 16여종	추후 별도 계약	(주)주용키친플러스 등
집기류	테이블외 170여종	가맹계약에 포함	(주)김가네
DID솔루션	DID 셋탑박스 1대	추후 별도 계약	(주)엘린미디어

공급업체 및 물품내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음.)

## 2. 영업 중의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 1) 비용 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수 없는사유	비고
교육훈련비	(주)김가네	220	교육실시 10일이전			교육 필요시 지급
광고분담금	(주)김가네	후불방식	발생시			p.35 참조
로열티(기본형)	(주)김가네	월220	매월말일			
영업표지변경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3,000~4,000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수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POS 사용료 (매출관리)	지정업체	월 8.7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점포환경개선 비용	협력업체	견적가의 20~40%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전 40% 중도금 40% 공사완료후 50%			p.38 참조
DID솔루션 유지보수	협력업체	66 (1대)	3년 계약기간 이후			초기 3년계약이후 1년 단위 갱신계약
지연이자	(주)김가네	연 15%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 리모델링에 대한 범위와 비용은 본사와 협의 후 진행합니다.

## 2) 로열티 비용 부담 기준

본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표의 사용과 경영지도의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에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비용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로열티	(주)김가네	220	매월말일	서비스표 및 경영지원에 대한 대가를 후불형식으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반환하지 않는다.	

## 3)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은 추정금액으로 2023년도에 당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한 구입요구품목의 매출액에서 해당 품목의 구매금액 합을 뺀 차액을 6개월 이상 운영한 가맹점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경우 전년도에 구입하여 금년에 공급하는 부분, 금년에 구입하였으나 아직 공급하지 않은 부분, 지사 가맹지역 및 자체생산품목에 대한 차액가맹금 미포함 등으로 인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 가맹사업에 대한 감독

감독 항목	내 용	시 기	비 고
운영표준화 관리	Q.S.C관리(재고처리) 운영사항 점검(인테리어,통일화등)	한달1회이상	문의 : 가맹사업부 (02-923-7127)
매출 및 수금관리	사업률 관리 및 수금관리 제품 검수 및 출고 (회계처리)	주5일 이상	문의 : 가맹사업부 (02-923-7127)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별도로 납입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초계약 기간(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 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최초계

약기간(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김가네’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주)김가네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보증금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될 경우 당사가 제공한 중요한 서류 및 제반 자료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귀하는 계약종료 즉시 가맹점 내·외부의 상호, 서비스표, 서비스마크 등 전표장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7일 이내 철거하여 원상 복구한다. 또한 사용중인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중단 및 해지 후 당사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정산하여 그 금액을 교부 받는다.

당사는 가맹비 반환 조건에 의하여 가맹비의 일부를 귀하에게 반환해야 하는 경우, 당사는 귀하가 상호 등의 사용중단 및 원상복구가 완료된 후 반환한다.

귀하는 철거 및 원상복구의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귀하가 영업표지의 철거의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지체기간에 대하여 m<sup>2</sup>당(본 계약에 명시한 가맹점 면적) 1일 3,000원씩으로 산출한 금액을 그 지연손해금(점포면적 X 지체일수 X 3,000원)으로 당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귀하는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후 “갑”의 영업표지나 상호와 유사한 영업표지나 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당사만의 특유한 메뉴(메뉴명, 메뉴세팅, 메뉴조리법등)가 있을 경우 이를 차용할 수 없다.

또한, 가맹점사업자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은 자체적으로 계약종료시점에 맞추어서 소진하여야 합니다.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김가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사항은 [별첨 2. 원부재료 및 초도상품, 집기류]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물품 구입 및 입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지정상품의 경우 맛 품질의 관리 및 재질, 규격, 디자인등 지정된 상품으로 구입의 강제성이 있으나 구입경로(거래상대방)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품목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를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해당없음.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수취한 경제적 이익은 가맹점의 상품공급액 인하로 적용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이익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김밥류	김가네김밥	참치김밥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구두 경고 2회 위반: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위반:계약해지
	멸추김밥	소고기김밥		
	더블치즈김밥	통새우롤		
	돈까스롤	에그스팸김밥		
	와사비크래미김밥	소고기주먹밥		
분식류	철판치즈불닭쫄면	떡만두국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구두 경고 2회 위반: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위반:계약해지
	냉소바	쫄면		
	라면	튀김우동		
	유부우동	모듬오뎡		
	라볶이	쌀떡볶이		
	김치말이국수	물냉면		
	비빔냉면	잔치국수		
라이스류	철판치즈김치볶음밥	스팸김치볶음밥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구두 경고 2회 위반: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위반:계약해지
	철판해물볶음밥	오므라이스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육개장	스팸엿날도시락		
	김치가즈동	치즈돈까스		
	등심돈까스	닭갈비덮밥		
	커리덮밥	치킨마요덮밥		
	제육덮밥	철판낙지덮밥		
	소불고기덮밥	소고기돌솥비빔밥		
	야채돌솥비빔밥	김치불고기돌솥밥		
사이드	야채튀김	김말이튀김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구두 경고 2회 위반: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위반:계약해지
	오징어튀김	왕새우튀김		
	군만두	갈비만두		
	떡꼬치	소떡소떡		

#### [지역 지사형]

구분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김밥류	김가네김밥	참치김밥		1회 위반:구두 경고	

	더블치즈김밥	멸추김밥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2회 위반:서면시정요구 3회 이상위반:계약해지
	소고기김밥	통새우롤		
	돈까스롤	에그스팸김밥		
	와사비크래미김밥	소고기주먹밥		
분식류	철판치즈불닭볶음면	떡만두국		
	냉소바	졸면		
	라면	튀김우동		
	유부우동	모듬오뎡		
	쌀떡볶이	라볶이		
	김치말이국수	잔치국수		
	물냉면	비빔냉면		
라이스류	철판치즈김치볶음밥	스팸김치볶음밥		
	철판해물볶음밥	오므라이스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육개장	스팸옛날도시락		
	김치가즈동	치즈돈까스		
	등심돈까스	닭갈비덮밥		
	커리덮밥	치킨마요덮밥		
	제육덮밥	철판낙지덮밥		
	소불고기덮밥	김치불고기돌솥밥		
	야채돌솥비빔밥	소고기돌솥비빔밥		
	김치찌개	차돌된장찌개		
사이드	야채튀김	김말이튀김		
	오징어튀김	왕새우튀김		
	교자군만두	갈비만두		
	비빔만두	튀긴만두		
	떡꼬치	소떡소떡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 상대방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제한하지는 않으나 본사공급품목(식자재, 공산품등 포함)에 대해서는 (주)김가네의 노하우 및 상표권등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재료 및 공산품 자체를 제3자에게 공급하거나 판매해서는 아니 됩니다.

거래상대방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제3자	원재료 및 공산품일체	(주)김가네의 노하우 및 상표권을 침해하는 범위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위반 : 1차서면 시정요구 3회 위반 : 2차서면 시정요구 4회 위반 : 계약해지	기타법률 사항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형]

구분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 통보 방법	비고
김밥류	김가네김밥	4,500	참치김밥	5,500	개별공지	
	멸추김밥	5,500	소고기김밥	5,500		
	더블치즈김밥	5,500	통새우롤	6,000		
	돈까스롤	6,000	에그스팸김밥	6,000		
	와사비크래미김밥	6,000	소고기주먹밥	4,000		
분식류	철판치즈불닭쫄면	9,000	떡만두국	8,500	개별공지	
	냉소바	8,000	쫄면	7,500		
	라면	5,000	튀김우동	8,500		
	유부우동	7,500	모듬오뎡	7,500		
	라볶이	7,500	쌀떡볶이	6,500		
	김치말이국수	8,000	물냉면	8,000		
	비빔냉면	8,000	잔치국수	6,500		
라이스류	철판치즈김치볶음밥	9,500	스팸김치볶음밥	8,500	개별공지	
	철판해물볶음밥	8,500	오므라이스	8,500		
	순두부찌개	9,500	부대찌개	9,500		
	육개장	9,500	스팸엿날도시락	7,500		
	김치가츠동	8,500	치즈돈까스	10,500		
	등심돈까스	9,500	닭갈비덮밥	8,500		
	커리덮밥	9,000	치킨마요덮밥	7,500		
	제육덮밥	8,500	철판낙지덮밥	9,000		
	소불고기덮밥	8,500	소고기돌솥비빔밥	8,000		
	야채돌솥비빔밥	6,500	김치불고기돌솥밥	7,500		
사이드	야채튀김	3,500	김말이튀김	3,000		
	오징어튀김	3,500	왕새우튀김	2,500		
	군만두	6,000	갈비만두	6,000		

	떡꼬치	3,000	소떡소떡	3,000		
--	-----	-------	------	-------	--	--

[지역 지사형]

구분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상품·용역명	권장가격	가격통보 방법	비고
김밥류	김가네김밥	4,200	참치김밥	5,200	개별공지	
	더블치즈김밥	5,200	멸추김밥	5,200		
	소고기김밥	5,500	통새우롤	5,800		
	돈까스롤	5,800	에그스팸김밥	5,800		
	와사비크래미김밥	6,000	소고기주먹밥	4,000		
분식류	철판치즈불닭볶음면	9,000	떡만두국	8,000	개별공지	
	냉소바	8,000	쫄면	7,500		
	라면	5,000	튀김우동	8,500		
	유부우동	7,500	모듬오뎡	7,000		
	쌀떡볶이	6,000	라볶이	7,000		
	김치말이국수	8,000	잔치국수	6,500		
	물냉면	8,000	비빔냉면	8,000		
라이스류	철판치즈김치볶음밥	9,500	스팸김치볶음밥	8,500	개별공지	
	철판해물볶음밥	8,500	오므라이스	8,500		
	순두부찌개	9,000	부대찌개	9,000		
	육개장	9,000	스팸엿날도시락	8,000		
	김치가츠동	9,000	치즈돈까스	10,000		
	등심돈까스	9,000	닭갈비덮밥	8,500		
	커리덮밥	9,000	치킨마요덮밥	7,500		
	제육덮밥	8,500	철판낙지덮밥	9,000		
	소불고기덮밥	8,500	김치불고기돌솥밥	8,000		
	야채돌솥비빔밥	7,000	소고기돌솥비빔밥	8,000		
	김치찌개	9,000	차돌된장찌개	9,500		
사이드	야채튀김	3,500	김말이튀김	3,000		
	오징어튀김	3,500	왕새우튀김	2,500		
	교자군만두	6,000	갈비만두	6,500		
	비빔만두	7,000	튀김만두	3,000		
	떡꼬치	3,000	소떡소떡	3,5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시기별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최근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김밥.분식을 전문으로 하는 가맹사업	김가네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인구 약1만명 당 1점포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가맹계약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합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합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김가네' 브랜드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포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2024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97%	3%	해당없음

2)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 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0%	해당없음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의 기간

‘김가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신규계약 3년, 갱신계약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6조 3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6조 3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6조 3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3항
○ ‘김가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6조 3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6조 3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당사는 가맹점 운영 및 영업 상태에 대하여 당사의 기준(가맹점 경영, 마케팅, 서비스, 인력관리, 시설, 조리, 위생, 식자재 관리 등)에 의거 수시로(2개월에 1회 이상) 점검 및 교육·지도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조 1항
○ 당사는 가맹점 운영 및 영업상태의 점검 시 그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귀하가 즉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7조 1항
○ 법정상속인이 가맹점 운영권을 상속할 경우에는 당사에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7조 1항
○ 귀하의 점포를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양도할 경우, 사전에 당사에게 통보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7조 1항
○ 메뉴의 종류와 가격은 반드시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귀하가 지역 특성상 또는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조정을 필요로 할 시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대로 변경하여 운영할 경우.	7조 1항
○ 당사는 귀하에게 당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음식 맛을 유지하여 매출 및 이미지를 향상시킬수 있도록 표준화된 제품 메뉴얼과 식재료를 공급하며, 수시로 교육·지도한다. 동시에 귀하는 이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당사의 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7조 1항
○ 귀하는 포장 및 배달 시 당사 관리 정책에 의거 통일된 포장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그 자재는 당사의 상표가 부착된 종이도시락, 포장젓가락, 포장봉투 및 기타용기를 기본으로 하고, 귀하는 이를 임의로 제작할 수 없다.	7조 1항
○ 귀하가 3회 이상 상품·자재의 대금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7조 1항
○ 당사가 맛의 표준화 및 정통성 유지와 가맹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하는 식재료 구입을 거부하는 행위가 3회 이상 지속되는 경우.	7조 1항
○ 귀하가 운영중인 가맹점에 대하여 당사가 정보필요에 의거 매출공개 요청 시 귀하가 허위로 통지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7조 1항
○ 당사의 품질관리 기준을 3개월에 3회 이상 위반하는 행위.	7조 1항
○ 귀하의 채무액이 계약서에서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7조 1항

○ 귀하가 당사와의 협의없이 점포 운영을 7일 이상 방치하는 경우.	7조 1항
○ 귀하가 당사와 약정한 판매촉진 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7조 1항
○ 귀하가 노후된 점포설비의 교체·보수의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7조 1항
○ 귀하의 가맹점 종업원이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	7조 1항
○ 귀하가 인근 타 가맹점과의 마찰로 인해 당사의 보상금 중재안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경우.	7조 1항
○ 귀하가 당사의 사전승인 없이 동종의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7조 1항
○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자재 등 제반 물품을 인수 후 그 대금을 익 일 전액 지급하는 행위를 위반하여 서면경고를 3회 이상 받을 경우.	7조 1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귀하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7조 2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	7조 2항

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 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7조 2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7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 수정 사유 발생시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해당없음.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90일전) → 당사 담당부서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거절을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승인을 하는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신규가맹계약 작성.)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도 계약 체결(5일 소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가맹점 운영 인수인계(5일)	문의: 가맹사업부 (02-923-7127) 계약서 17조

당사는 양도를 승인하면 양도인과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잔여 계약 기간을 인정하고 가입비만 면제됩니다. 단,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 가맹계약을 맺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양도인이 양수인과의 관계가 직계1촌일 경우 가맹비는 면제되고 계약이행보증금과 소정의 교육비만을 부담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비고
상속	법정상속인	모든 권리의무	상속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상속이 인정될 시 가맹비 면제한다. 단, 교육비는 부담한다.
대리행사	본부 승인시 가능	가맹점 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교육과정 이수 후 대리운영 가능	
업무위탁	본부 승인시 가능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영업지역표기 지역 내에서] 귀하가 [김가네]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표기는 가맹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내용	경업허가 절차	비고
○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김밥이나 분식을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가맹사업부 (1588-7187)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김가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지역특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유롭게 조정 가능	주5일 이상 월22일 이상	문의: 가맹사업부 (1588-718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 가맹사업부에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3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 시 가맹본부에 사전 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	비고
1. 법적사항 2. 식자재 관리 3. 위생관리 4. 운영표준화 5. 영업상태 6. 메뉴조리	담당자 매장 방문 → 가맹점 종합평가서 작성 → 가맹점사업 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정기평가 (1회/1년) 수시평가 (1회/2개월)	가맹사업부 (1588-7187)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종합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주)김가네가 보관하게 됩니다.

## □ 가맹점 종합 평가서

		담당자 :	가맹점명 :			
		점검일자 :				
구분	점 검 사 항	점 검 결 과				
		우수	양호	불량	점수	비고
기본준수사항	1	문서관리(원산지표지판, 원산지 증명원, 보건증 등), 구비서류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위생교육 수료증) 비치여부			4	/
	2	본사 정책, 지도, 관리 철저히 준수하는가? (포스사용, 상표권 준수, 최근 이벤트, 시즌메뉴 참여)			5	/
	3	모든 고용에 대해 기준에 맞는 근로계약을 작성과 근로자에게 교부하였는가?(근로계약서 유무확인)			3	/
	4	오픈 마감시간(무단, 미통보) 무단휴점, 담당SV 사전 통보 여부			3	/
	5	점검 및 교육, 지도, 자료 요구시 (특별한 사유없는 한) 협조하고 있는가? (점검거부, 점검자에 대한 폭언 및 완력행위시 0점)			5	/
품질관리(Q)	6	필수사입품목 100% 사입?			15	/
	7	지정 상품 외의 상품사용 여부(미승인제품 취급, 판매)			10	/
	8	원, 부재료 관리(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5	/
	9	판매중인 메뉴 종류, 가격 (본사 표준 준수)			5	/
	10	신메뉴, 시즌 메뉴시행?			5	/
	11	용기, 포장용기 표준 제품 사용?			5	/
서비스(S)	12	배달어플 평점, 리뷰관리/고객 응대시 적절한 서비스 제공여부			5	/
	13	고객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는 어느정도인가? (매뉴얼 비치 및 접객 방법 등)			3	/
	14	고객 출입시 인사를 하고있는가?			3	/
	15	고객 클레임 건수 (가맹점 귀책사유 여부)			4	/
청결/위생관리 (C)	16	간판, 인테리어 노후로 인한 안전위험, 위생 문제가 있는가?			4	/
	17	주방 설비(덕트, 튀김기,냉장고,간택기,작업대 등) 제거가능한 이물질, 노후화, 변질 및 변형, 이물질, 정리정돈 등			4	/
	18	집기류(설비 제외, 각종 조리도구) 제거가능한 이물질, 노후화, 변질 및 변형, 이물질, 정리정돈 등			3	/
	19	주방 설비, 집기류 외의 주방, 홀 정리 및 위생상태			3	/
	20	개인위생, 복장 등 (유니폼, 위생모 착용)			3	/
	21	식자재 보관방법(냉장/냉동) 준수 및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3	/
				점수합계	100 / 0	
종합의견						
				가맹 점주	(인)	

##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김가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행사에 따라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

구분	광고성격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의 50%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가맹점 통보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의 25%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별도 절차 없음	
개별 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 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종료후 최종 분담금 확정	

※ 가맹점 부담 광고비는 광고 시 광고형태에 따라 본사부담액을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 부담액/가맹점수로 납부한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부와 광고·판촉 내용에 대해 협의 후 진행이 가능합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이 발생한 광고·판촉을 시행한 경우

사업연도 중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라도 부담한 광고·판촉을 시행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사업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해당 사업연도에 일부라도 비용이 집행된 경우를 포함한다.)별 명칭, 내용 및 실시기간

2. 해당 사업연도에 광고·판촉을 위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3. 해당 사업연도에 실시한 광고·판촉로 집행한 비용 및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한 총액

##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끼칠 경우 그 손해금을 배상해야 한다.
- 3)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제3자로부터 의 손해배상 청구등에 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한다.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5일 정도가 예상되며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33㎡기준)
합계		45일 내외	16p~18p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5~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 - 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4~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 예상매출산정서 제공	D-29	
가맹금 예치	- 신한은행에 가맹금 예치	D-28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5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 공사계약(공사 계약금 지급 40%)	D-24(1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내장, 주방시설, 간판 등) - 공사 중도금(40%) / 잔금지급 20%)	D-24~5(20일)	
교육 실시 및 식자재공급	- 점포운영교육 실시 - 초도 상품 공급	D-5~1(5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과 비용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나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 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li> <li>○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점의 통일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판교체 비용</li> <li>○인테리어 공사비용 (장비·장구의 교체 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li> <li>○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 계약서 등 공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li> <li>○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양분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 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li> </ul>	

			<p>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p> <p>&lt;분할지급 시 절차&gt;</p> <p>○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p> <p>(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p>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 해당없음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 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15]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 부담	문의: 가맹사업부 (02-923-7127)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김가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신한은행	최대 7천만원	신용 대출	면담 후 결정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2201-9004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지원 정책	주요 내용	지원 조건	지원 기간	지원 내용	비고
초기홍보지원	가맹점 오픈시 지역 홍보를 위한 블로거 지원	오픈시	오픈일로부터 1개월 이내	블로그 체험단 3명 지원	
홍보 pop지원	신메뉴 런칭시 포스터 지원	매장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가맹계약기간	홍보물 제공	

## Ⅷ.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김가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 소개 매장운영 전반적인 사항 메뉴 조리, 세무기본 POS 사용, 입금 방법 등	교육장 실습교육	개점전 5일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조리 종업원 관리 실무 운영표준화 교육	집단강의 메뉴얼 제공 방문실습교육 교육장 실습교육	운영점검 후 필요시 (사전협의)	필수 교육(신메뉴) 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 요청이 있을시

###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김가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신규 교육	8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1일	220	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 요청에 의한 교육

###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 4. 교육·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서 13조에 따라 개점전 5일 내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시작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수 교육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교육일정을 정하고 교육을 실시하므로 1회 이상 교육의 일정연기 및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서면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점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지하2층 DDP마켓 D6호

### 2.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비고
22개월	

### 3. 바로 전 사업연도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단위 : 천원)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273,535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 가맹계약부(02-923-712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239~4241)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www.gimgane.co.kr](http://www.gimgane.co.kr)] 또는 가맹사업거래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재무제표]

2022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3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4년 재무상태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022년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별첨2 . 원부재료 및 초도상품, 집기류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2 . 원부재료 및 초도상품, 집기류 목록]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